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58

발의연월일: 2020. 6. 16.

발 의 자: 박성민·김정재·강민국

정운천 · 송언석 · 김형동

강대식 · 김석기 · 이종배

이주화 • 金炳旭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될 경우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방·치료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는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, 각 지방 자치단체가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한 것임을 감안할 때,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·손소독제 등 감염병 대 비 의약품·장비를 비축·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주요내용

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

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마스크·손소독제 등 감염병 대비 의약품·장비를 비축·관리하고, 재난상황 발생 시 이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감염병 위기에 지방자치단체가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0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0조의3을 제40조의4로 하고,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제40조의3(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)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마스크·손소독제 등 감염병 대비 의약품·장비를 비축·관리하고, 재난상황 발생 시 이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40조의3(지방자치단체의 감염
	병 대비 의약품 및 장비의 비
	축)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
	<u>수·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</u>
	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
	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
	<u>처하기 위하여 마스크·손소독</u>
	제 등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
	비를 비축·관리하고, 재난상황
	발생 시 이를 지급하는 등 필
	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<u>제40조의3</u> (수출금지 등) (생 략)	<u>제40조의4</u> (수출금지 등) (현행 제
	40조의3과 같음)